

대구지방법원 2024. 4. 30 선고 2021가합2112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신규원, 정희원, 김민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소윤

변 론 종 결 2024. 4. 9.

판 결 선 고 2024. 4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702,0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C 주식회사,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, 주식회사 E,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

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하였다가 2024. 4. 8.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주식회사 G(이하 ‘G’이라 한다)과 G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21. 8. 초경 주식회사 H(이하 ‘H’이라 한다)과 ‘G 또는 피고가 H에게 2021. 9. 30.까지 원석대금 및 운송비로 1,702,040,000원을 지급하고, 위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 시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’는 취지의 합의(이하 ‘이 사건 합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나. H은 2021. 8. 21.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후 2021. 10. 7.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,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,702,0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. 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권순엽, 판사 김경민, 판사 이무형